

#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54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2월 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징수대상시설

구분	용마터널	강남순환로
위치	중랑구 면목동~ 구리시 아천동	금천구 시흥동~ 서초구 우면동
규모	연장 3.5km, 왕복 4차로	연장 12.4km, 왕복 6~8차로
영업소	1개소	2개소(금천, 선암)
개통일시	2014.11.21.	2016.7.3.
구분	신월여의지하도로	서부간선지하도로
위치	강서구 신월동~ 영등포구 여의도동	영등포구 양평동~ 금천구 독산동
규모	연장 7.53km 왕복4차로	연장 10.33km 왕복4차로
영업소	1개소	1개소
개통일시	2021.4.16.	2021.9.1.

나. 통행료 인상내역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구 분	용마터널			강남순환로		
	최초 (‘14.11.21)	현재 (2020년)	2023년	최초 (‘16.7.3)	현재 (2020년)	2023년
소 형	1,500	1,500	1,700	1,600	1,700	1,800

구 분	신월여의지하도로			서부간선지하도로		
	최초 (‘21.4.16)	-	2023년	최초 (‘21.9.1)	-	2023년
소 형	2,400	-	2,600	2,500	-	2,700

※ 경차 : 50% 할인 적용.

다. 통행료의 산출기초

- 협약상 소형차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 적용하여 산정(붙임 참조)

라. 징수기간 : 2023.4.1.부터

마. 통행료 징수방법 : 유인징수 및 전자요금(ETCS)징수 방식 혼용

바.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

-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(붙임 참조)

사.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: 붙임 참조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

시행령 제23조,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 
기본 조례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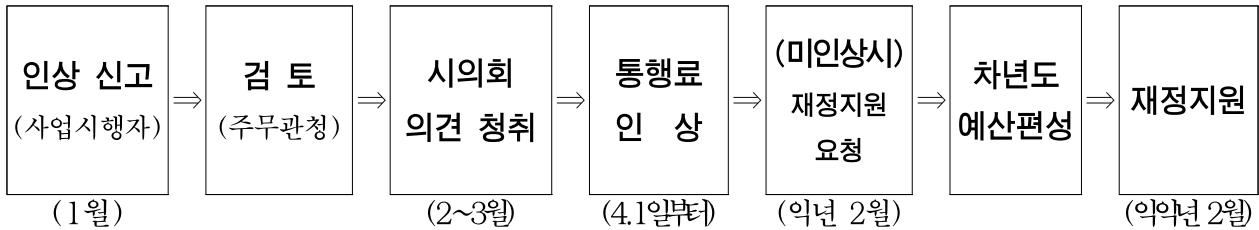
※ 작성자 : 도로계획과 민자사업팀 김정식 (☎ 2133-8073)

**붙임**

## 통행료 산정 관련 자료

### 1. 통행료 인상 절차 및 산정방법

○ 인상 절차



○ 통행료 산정방법(100원 단위 절상 또는 절하)

- 통행료 = 기존 통행료 ×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

### 2. 2023년 통행료 산출내역

**【용마터널】**

-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'01.4월부터 '22.12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166.23%로 산정통행료는 1,662원임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구 분	소 형	
기준 통행료(실시협약)	1,000. <sup>00</sup>	
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	166. <sup>23</sup> %	
'01. 4월 소비자물가지수*	65. <sup>74</sup>	
'22.12월 소비자물가지수*	109. <sup>28</sup>	
2023년	산정통행료	1,662. <sup>31</sup>
	적용통행료	<b>1,700</b>

※ 출처 :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, 2022.12.

**【강남순환로】**

-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'00.11월부터 '22.12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은 171.67%로 산정통행료는 1,833원임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구 분		소 형
기준 통행료(실시협약)		1,067. <sup>48</sup>
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		171. <sup>67</sup> %
'00.11월 소비자물가지수		63. <sup>66</sup>
'22.12월 소비자물가지수		109. <sup>28</sup>
2023년	산정통행료	1,832. <sup>57</sup>
	적용통행료	<b>1,800</b>

**【신월여의지하도로】**

-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'07.2월부터 '22.12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 141.89%로 산정통행료는 2,642원임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구 분		소 형
기준 통행료(실시협약)		1,862. <sup>00</sup>
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		141. <sup>89</sup> %
'07.02월 소비자물가지수		77. <sup>02</sup>
'22.12월 소비자물가지수		109. <sup>28</sup>
2023년	산정통행료	2,642. <sup>01</sup>
	적용통행료	<b>2,600</b>

**【서부간선지하도로】**

- 기준통행료 산정기준 시점인 '07.7월부터 '22.12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율 139.86%로 산정통행료는 2,691원임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구 분		소 형
기준 통행료(실시협약)		1,923. <sup>66</sup>
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		139. <sup>86</sup> %
'07.07월 소비자물가지수		78. <sup>13</sup>
'22.12월 소비자물가지수		109. <sup>28</sup>
2023년	산정통행료	2,690. <sup>47</sup>
	적용통행료	<b>2,700</b>

### 3. 차종 구분

구분	대상 차량 제원
소형	승용차, 15인승 이하 소형버스, 2.5톤 미만 소형화물
중형	16인승 이상 대형버스, 2축 이하, 2.5톤 이상~10톤 이하 화물차
대형	3축 이상, 10톤 초과 화물차
경차	배기량 1,000cc 미만 경자동차, 길이 3.6m이하, 너비 1.6m 이하, 높이 2.0m 이하

### 4.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대상

가. 면제 대상(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제1호)

구분	면제 대상
유료 도로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군작전용 차량, 구급 및 구호차량,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</li> <li>○ 경찰작전용 차량,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·유지관리용 차량</li> <li>○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비영업 차량 중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</li> <li>○ 국가유공자(1~5급) 및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(1~5급) 또는 대상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승차한 비영업용 차량중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인승~10인승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</li> <li>○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</li> </ul>
서울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·구 제설차량(제설기간, 11.15~익년 3.15)</li> <li>○ 시 도로유지 관리차량</li> </ul>

나. 감면 대상(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제2호)

구 분	감면 대상	감면율
경자동차	○ 배기량 1,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	50%
전기자동차	○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차량	50%
장애인 차량	○ 등록된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
국가유공자 차량	○ 6급 또는 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
5·18 민주유공자	○ 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등록된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
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	○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위 환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

\*비영업용 차량(시행규칙 제5조제4항) :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인승~10인승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

다. 통행료 면제 및 감면 차량의 해당여부 증명

- 영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식별표지 부착

5.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

관리청	시 설 명	연 장 (km)	통행요금
서울특별시	우면산터널	2.96	소형·중형 : 2,500원
강원도	미시령터널	3.69	소형 : 3,300원, 중형 : 5,600원 대형 : 7,200원
대구광역시	대구남부순환도로 (앞산터널로)	10.44	소형 : 1,600원, 대형 : 2,300원
경기도	수석~호평	11.2	소형 : 1,500원, 중형 : 2,900원 대형 : 3,600원
경기도	일산대교	1.84	소형 : 1,200원, 중형 : 1,800원 대형 : 2,400원
경상남도	마창대교	1.70	소형 : 2,500원, 중형 : 3,100원 대형 : 3,800원
경상남도	창원~부산	22.48	소형 : 2,000원, 중형 : 3,000원 대형 : 3,800원

※ 통행료는 2022.12.31. 기준임

## 6. 소비자물가지수 추이

	소비자물가지수 (2020=100, %)			
	지수	전월비	전년(동월)비	전년누계비
2000.11	63.656	-	-	-
2001.04	65.740	-	-	-
2007.02	77.017	-	-	-
2007.07	78.134	-	-	-
2013	93.010	-	-	1.3
2014	94.196	-	-	1.3
2015	94.861	-	-	0.7
2016	95.783	-	-	1.0
2017	97.645	-	-	1.9
2018	99.086	-	-	1.5
2019	99.466	-	-	0.4
2020	100.00	-	-	0.5
2020.12	100.33	0.2	0.6	0.5
2021.01	101.04	0.7	0.9	0.9
02	101.58	0.5	1.4	1.2
03	101.84	0.3	1.9	1.4
04	101.98	0.1	2.5	1.7
05	102.05	0.1	2.6	1.9
06	102.05	0.0	2.3	2.0
07	102.26	0.2	2.6	2.1
08	102.75	0.5	2.6	2.1
09	103.17	0.4	2.4	2.2
10	103.35	0.2	3.2	2.3
11	103.87	0.5	3.8	2.4
12	104.04	0.2	3.7	2.5
2022.01	104.69	0.6	3.6	3.6
02	105.30	0.6	3.7	3.6
03	106.06	0.7	4.1	3.8
04	106.85	0.7	4.8	4.1
05	107.56	0.7	5.4	4.3
06	108.22	0.6	6.0	4.6
07	108.74	0.5	6.3	4.9
08	108.62	-0.1	5.7	5.0
09	108.93	0.3	5.6	5.0
10	109.21	0.3	5.7	5.1
11	109.10	-0.1	5.0	5.1
12	109.28	0.2	5.0	5.1

※ 출처 :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, 2022.12.